

영등포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9.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임.

■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신고기한·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지급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부조리 신고서 및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및 별지 서식)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 2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근거가 된 경우 : 100만원 이내
 - 그 밖에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20만원 이내
-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부칙)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0일자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여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수수 및 향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한 것이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부조리 신고방법과 신고사항의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처리기한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별표에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허위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과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미 서울시와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광진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9. 23.

보 고 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年(金品 및 饗應授受, 公金の 横領·流用の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